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21 - 59 - 218호 (사건번호 : 202106조사038)

안 건 명 (주)LG유플러스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대표자 황 현 식

의결연월일 2021. 12. 29.

주 문

1. 피심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이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나.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문안 및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판매점이 '장려금 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가항 및 나항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아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1,16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사실

1. 피심인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약 1,490만명('21.8월말 기준)이고, 매출액은 '20년도 기준 58,130억원이다.

2 조사대상 기간('21.1.1.~5.31) 중 피심인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약 1,504천명이며, 그 중 외국인 개통가입자 수는 66천명(3.0%)이고, 가입유형별 외국인 개통가입자 수는 신규가입은 20천명(30.3%), 번호이동은 13천명(20.4%), 기기변경은 32천명(49.4%)이다.

< 표 1.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 단말기 개통현황 (단위 : 명) >

구 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계
전 체	260,536	320,295	923,796	1,504,627
외국인영업	19,890	13,376	32,462	65,728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 3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 중 이동통신 전체 가입자 수는 △9,056명 감소하였고, 이 중 이동통신 3사간 번호이동(MNP)에 의한 가입자 수는 1,468명 순증하였다.

< 표 2. 피심인의 조사대상 기간 가입자 증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유지가입자	번호이동 순증감	비 고
전체 가입자 증감 내역	△9,056	1,468	-

* MVNO 가입자 제외

2. 조사경위

- 4 피심인 등 이동통신 3사가 외국인에게 과도한 차별적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언론의 지적('21.2.11)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판매점을 대상으로 '21. 4. 9일부터 5. 31일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 5 그 결과 피심인이 외국인 가입자를 유치하는 판매점에 단말기 장려금을 과도하게 제공하여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한 지원금(이하 “과다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실조사로 전환하였다.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 6 방송통신위원회는 '21. 6. 23일부터 '21. 8. 31일까지 피심인 및 피심인 관련 11개 판매점의 외국인영업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였다.

2. 조사대상 현황

- 7 피심인이 '21. 1. 1일부터 5. 31일까지 외국인영업을 통해 유치한 65,728건 중 10개 판매점이 유치한 1,897건(2.9%)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 표 3. 조사표본 수 현황 >

구 분	총 가입 건수	조사표본 수		
		판매점	가입 건수	비율(건수)
조사표본 내역	65,728건	10개점	1,897건	2.9%

※ 당초 11개점(3사 겸업 8개점, 2사 겸업 2개점, 전용 1개점)을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피심인의 전용 1개점이 연락처 위장 및 장기폐문 등으로 현장조사를 하지 못해 10개점만 조사

3. 행위 사실

가. 과다 지원금 지급

- 8 '21. 1.~5월 기간 중 피심인과 외국인 이용자의 계약체결을 채위탁받아 처리하는 10개 판매점 1,897건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1,488건(위반율 78.4%, 판매점별 43.2%~100%)에 과다 지원금을 평균 244,401원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과다 지원금 지급형태별 : 단말기할부금 대납 1,722건(54.1%), 현금 지급 837건(26.3%), 위약금 대납 510건(16.0%), 기타 116건(3.6%)

< 표 4. 피심인의 과다 지원금 지급 현황 >

구 분	조사표본 가입 건수	과다 지원금		과다 지원금 수준 (평균)	위반율
		판매점 수	가입 건수		
과다 지원금 지급 내역	1,897건	10개점*	1,488건	244,401원	78.4%

* 판매점 수 : 3개사 겸업 8개점, 2개사 겸업 2개점

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 9 피심인 관련 10개 판매점에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1,488건을 분석한 결과, 657건(34.6%)이 신규가입에 평균 34.5만원, 번호이동에 28.2만원, 기기변경에 19.9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였고,
- 10 936건(49.3%)이 저가요금제에 평균 22.3만원, 고가요금제에 28.9만원의 과다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피심인 차별 지원금 지급 현황 >

구 분	판매점	가입유형별 차별 지원금				요금제별 차별 지원금		
		위반건수 (위반율)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위반건수 (위반율)	저가 요금제	고가 요금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내역	10개점	657건 (34.6%)	34.5만원	28.2만원	19.9만원	936건 (49.3%)	22.3만원	28.9만원

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 11 피심인의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대리점·판매점에 지시한 외국인 영업정책 및 판매점 관리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21. 1~3월까지 '지역 안정화' 명목으로 일반 대리점은 장려금을 축소(7만원~27만원)하면서 외국인영업 판매점에는 제외하였고, 21. 4월 이후 "국제전화 002알뜰 10,000" 부가서비스 모집 조건으로 3만원(내국인가입자 1만원)의 차별적인 우대장려금을 제공하면서 가입 조건을 관리하고 판매실적 등을 독려하였다.

1)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법 시행령 제3조)

< 표 6. 피심인의 외국인영업 차별 우대 장려금 정책 사례 >

구분	주요 샘플 사례
외국인 영업정책	

- 12 이로 인해 10개 판매점 540건(28.4%)에서 가입유형별로 평균 38만원~44만원의 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어 가입유형별로 22만원~35만원의 과다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었고,
- 13 780건(41.1%)에서 요금제별로 평균 38만원~40만원의 장려금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어 요금제별로 24만원~31만원의 과다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 부당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현황 (단위 : 지원금/장려금 만원) >

구분	조사건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가입유형별 지원금/장려금			요금제별 지원금/장려금		위반율 %
		판매점	건수	신규	MNP	기변	저가	고가	
가입유형별 내역	1,897건	10개점	540건	35/44	30/38	22/38	-	-	28.4%
요금제별 내역	1,897건	10개점	780건	-	-	-	24/38	31/40	41.1%

라. 장려금 지시(표준서식 사용 등) 투명화 관련

- 14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40차 회의 심의·의결 시('20.7.8)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여 이동통신사와 대리점간에는 시스템을 통한 표준서식을 사용중이나, 대리점과 판매점간에는 표준서식이 아닌 문자 등의 수단(구두·은어)으로 장려금 정책을 전달 받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행위사실의 위법성

1. 관련 법 규정

- 15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용자에게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법 제4조제5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법 제9조제3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대리점에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16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2]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8. 위법성 판단 근거 법령 >

[단말기유통법]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하생략)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법성 판단

가. 과다 지원금 지급

17 피심인 관련 외국인영업 11개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가 모든 조사대상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78.4%)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18 피심인 관련 외국인영업 11개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행위가 다수의 조사대상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각 34.6%, 49.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철저한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19 피심인이 외국인영업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조건, 실적 등을 관리하고, 다수 판매점에서 상당한 비율(28.4%, 41.1%)로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은 같은 법 제9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0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고 공시된 지원금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판매점이 가입유형 및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피심인이 판매점에 가입유형별, 요금제별로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위반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이행기간으로 한다.

2.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21 피심인은 위 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정문 출입구, 유통점 정문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 장소 중에서 공표사실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9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크기는 A2 사이즈(42cmx59.4cm)로 하고,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케이티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와 관련 판매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과다 지원금 및 부당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00월 00일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표이사 ○○○

3.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판단

22 피심인은 단말기유통법 제14조제2항제72)호에 따라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째 반복*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 적용이 가능하나

* 이동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법 위반(제9조제3항)으로 i) 도매 및 온라인영업 제재('19.3.20),
ii) 온라인영업 제재('20.7.8)

23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20.7.8)>에 따라 위반을 수준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1의 가항)에 해당되나, 외국인영업 관련시장이 소규모 영세판매점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경우 영세한 유통점이 주로 피해를 입을 우려(3의 나항)가 크므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다.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신규모집금지 적용 기준 >

1. 이동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법행위가 최근 3년간 3회 이상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한다.

가. 관련 유통점의 초과지원금 위반 행위(법 제4조제5항)가 관련시장에서 매우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위반율 70% 이상)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별 유도 행위(법 제9조제3항)의 정도가 과다 지원금 위반행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나~다 (생략)

2. 위 "1의 가~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그 주도한 1개 사업자에게만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1의 요건에 해당되어 이용자의 신규모집 금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 적용 시기, 기간,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신규모집 금지로 인해 그 침체를 더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신규모집 금지가 신규폰 구매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관련시장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가 판매점 등 영세한 유통점 중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72)호(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 : 신규모집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 24 피심인은 위 1항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리점과 판매점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판매점이 '장려금 문서를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 25 피심인은 위 1항 및 2항의 시정명령을 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V. 과징금 부과

- 26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와 피심인 관련 판매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1항·제2항·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에 의해 과징금 산정 절차를 거쳐 아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1. 과징금 부과 상한액

- 27 피심인 및 피심인 관련 판매점의 같은 법 제3조제1항, 제4조제5항,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49,887억원)의 2/100가 부과 상한액으로서(법 제15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2] 제1호 가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99,770,000천원(백만원 이하 생략)이다.

2. 기준금액³⁾ 산정

- 28 피심인의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은 47,101,580천원이다.

3)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에서는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해당 위반행위의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서의 영향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9. 피심인 관련매출액 산정 근거 >

피심인의 관련매출액 : 위반가입자수(약 51,530명) × 평균가입기간(25.6개월) × 1 가입자당 월평균수익(35,705원) = 47,101,580천원

29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와 시장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 정도를 판단하고 부과기준율(1%~4%)을 적용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의 과다 지원금 위반율, 평균 과다 지원금 수준, 부당 차별 유도 위반율, 변동 가입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중대한 위반행위”로 하고, 이에 따른 부과기준율은 2.6%를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1,224,641천원으로 한다.

3. 필수적 가중·감경

30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심인은 3회 위반으로 필수적 가중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추가적 감경

31 관련 법령 및 고시(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피심인이 동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해 소속 임원·종업원 및 유통점등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한 바, ‘핀셋형 자율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피심인의 자율준수 활동 실적은 인정하되, 그 자율준수 활동의 운영실적(자율정화반 조치율 약 50%)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 감경 5%를 적용하기로 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 이상 4% 미만)	시장의 본질적 또는 장기적 왜곡, 피해규모의 광범위,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 (2% 이상 3% 미만)	시장의 단기적 왜곡,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등
중대성 약한 위반행위 (1% 이상 2% 미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피해의 경미, 이용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 표 10. 피심인의 조사대상기간 중 법 자율준수 활동 >

구 분		법 자율준수 활동 실적
법 자율 준수 활동	불·편법 실가입 감시	155건
	상황반 운영	팀장급 14회, 실무자급 127회
	사전승낙 관리강화	1)철회 231건, 2)일시중지 281건, 3)경고 621건
	자율정화반 운영	온·오프라인 조치 8,045건 / 점검 16,046건(조치율 50.1%)

5. 최종 과징금의 결정

32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과징금 1,224,641천원에 추가적 감경 61,232천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1,160,000천원(백만원 이하 절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VI. 형사고발 판단

33 피심인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20조(벌칙) 및 제21조(양벌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나, 위반행위 범위가 이동통신 전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다수의 이용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VII. 결론

34 상기 피심인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35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12월 29일

위원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현	
위원	안 형 환	
위원	김 효 재	
위원	김 창 룡	